

사 업 연 도	. . . ~ . . .	<b>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b>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 세 대 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 산 항 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 (⑥+⑦+⑧+⑨)			
	차 감 항 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⑯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⑰ R&D준비금 익금산입액			
		⑱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⑲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⑳ 소계 (⑪+⑫+⑬+⑭+⑮+⑯+⑰+⑱+⑲)			
	⑳ 기업소득 (⑤+⑩-⑳)				
	㉑ 과세대상 소득 (㉑)×80% 또는 30%)				
	투 자 금 액	유 형 자 산	㉒ 기계및장치등		
			㉓ 업무용 건물 건축비		
㉔ 부속토지				착공예정일	. . .
㉕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㉖ 무형자산					
㉗ 소계 (㉒+㉓+㉔+㉕+㉖)					
임 금 증 가 액	㉘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㉙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㉚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㉛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㉜ 증가금액 [(㉙-㉘)×1.5+(㉛-㉚)×0.5]				
배 당 금 액	㉝ 현금배당				
	㉞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㉟ 소계 (㉝×0.5+㉞×0.5)				
기 타	㊱ 상생협력출연금등				
미 환 류 소 득	㊲ A방식(80% 적용)[㉑-(㉗+㉛+㉟+㊱+㉜)]		㊳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㊲ B방식(30% 적용)[㉑-(㉛+㉟+㊱)]			금액	
초 과 환 류 액	A방식				
	B방식				

	2016년	2017년	2018년
㉑ 미환류소득			
㉒ 이월된 초과환류액			
㉓ 차기환류적립금			
㉔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㉕ 초과환류액			
㉖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㉑-㉒-㉓+㉔-㉕)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㉖×10%)**      ㉗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

**작성 방법**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2017. 12. 19. 개정)되면서 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서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이용합니다.

\* 다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상기 서식을 작성하고,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법인이 ㉑,㉒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㉓,㉔란에 표시합니다.
- ㉕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㉑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㉖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㉗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㉘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㉙란에 적습니다.
- ㉑ 및 ㉕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2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㉓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 ㉔란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㉓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례>2017년에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㉓)은 2018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㉔)에 기재하고, 2018년 초과환류액(㉕,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를 적용하여 계산)에서 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합니다.
- ㉗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붙임 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